

부속서 12A : 구체적 약속

제1절 : 싱가포르의 구체적 약속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A. <u>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p> <p>이 양허표의 모든 약속은 제12장 제8조와 합치하는 싱가포르 통화청 또는 싱가포르 내의 그 밖의 관련 당국 또는 기관의 가입 요건, 국내법, 지침, 규칙 및 규제, 약정 및 조건에 따른다.</p>				
<p>(a) 연금, 장애소득, 상해 및 건강보험서비스를 포함한 생명보험 서비스</p>	<p>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은 국내소유 보험회사의 지분을 총 49%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 결과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신규 보험회사 허가¹⁾, 신규 대표사무소 설립, 투자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 공공퇴직금 또는 법정저축제도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은 약속 안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1) 허가는 보험에 관한 싱가포르 국내법에 규정되었듯이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으로 표현되며, 상응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b) 장애소득, 상해 및 건강보험, 신원보증 및 이행보증 또는 유사한 보증 계약을 포함한 손해보험서비스	1) 약속 안 함 2) 자동차 제3자 책임 및 근로자 배상에 대한 의무보험은 허가 ¹⁾ 를 받은 싱가포르 소재 보험회사만 판매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3) 외국인은 국내소유 보험회사의 지분을 총 49%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 결과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신규 보험회사 허가 및 신규 대표사무소 설립은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허가는 보험에 관한 싱가포르 국내법에 규정되었듯이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으로 표현되며, 상응함

공급형태 : 분야 또는 업종	1) 국경 간 공급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2) 해외소비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3) 상업적 주재 추가약속	4) 자연인의 주재
(c) 재보험 및 재재보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재보험사는 지점 또는 자회사로 설립될 수 있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d) 중개 및 대리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 중개	1) 약속 안 함 2) 무허가 ²⁾ 보험회사에 대한 대리활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보험 위험 및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가입된 선주의 해운상의 책임관련 보험 위험을 제외하고, 중개자에 의하여 국내 위험이 싱가포르 외부에도 미치는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3) 직접일반보험 및 재보험 중개인을 국내 법인화된 자회사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e) 계리, 손해사정, 해손사정 및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보조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2) 허가는 보험에 관한 싱가포르 국내법에 규정되었듯이 싱가포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와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으로 표현되며, 상응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B. <u>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u></p> <p>본 양허안의 모든 약속은 제12장 제7조와 합치하는 싱가포르 통화청 또는 싱가포르의 그 밖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의 가입 요건, 국내법, 지침, 규칙 및 규제, 약정 및 조건에 따른다.</p>				
(a) 대중으로부터 예금 및 그 밖의 요구불 자금 수취	<p>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은행, 중금사 및 금융회사로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기관만 예금을 수취할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재산관리나 파산절차에 있어서 본국 예금자에 비하여 외국 사무소의 예금자에게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본국법에 따를 경우, 통화청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해당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싱가포르 사무소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p> <p>외국계 은행, 중금사 및 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B(a) 에서 B(1)까지의 활동 하에 열거된 제한 및 다음의 제한에 따른다.</p>	<p>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u>상업은행</u> 외국계 은행은 (후선업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무소만 운영할 수 있다. 외국계 은행은 타지역에 ATM, ATM 네트워크 및 새로운 분점을 설치할 수 없다. 모든 전자적 은행 업무 서비스 공급은 약속 안 함. 은행의 위치 및 은행 및 분점의 재배치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p> <p>제한된 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고정예금 수취 및 당좌계정 운영만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달러 당좌예금에 대하여는 예금당 250,000 싱가포르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예금만 수취할 수 있다.</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역외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고정예금을 수취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싱가포르 달러 당좌예금의 경우 예금당 250,000 싱가포르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예금만 수취할 수 있다.</p>		
	<p>상업은행 신규 완전 및 제한된 은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규 외국계 은행은 역외은행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로만 설립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을 하거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통화청의 승인 하에 은행은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외화저축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단일 또는 관련 외국인주주 집단은 현지은행의 지분을 5퍼센트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각 국내은행에 대한 총 외국인 소유제한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되었다</p> <p>종금사 외국계 은행 및 종금사는 종금사 자회사 또는 종금사 지점으로 설립될 수 있다</p>		<p>종금사 종금사는 (후선업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무소만 운영할 수 있다. 종금사의 위치 및 재배치는 통화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통화청의 허가 하에 종금사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기금을 조달하고,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주주 및 주주, 은행, 그 밖의 종금사 및 금융회사의 통제를 받는 회사로부터 싱가포르 달러기금을 조달할 수 있다.</p>		
	<p>금융회사 신규 금융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의 금융회사 지분 인수 및 기존 금융회사의 외국인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 및 판매하는 것은 약속 안함. 모든 현지 또는 외국인 소유의 금융회사는 싱가포르 달러로만 영업할 수 있다. 통화청의 사전승인 하에 적격한 금융회사의 경우 외화, 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외화주식, 지분 또는 채권/전환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위치 및 분점의 재배치는 통화청의 사전승인을 요구한다. 외국인 소유 금융회사는 타지역에 ATM, ATM 네트워크 및 신규 분점 설치를 할 수 없다.</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b) 소비자 신용, 담보신용, 상업적 거래에 대한 대리 활동 및 용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i)싱가포르 지침에 따라 통화청의 승인을 받은 신용카드발급자는 사내 신용카드 외에 신용카드 및 선지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각 역외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싱가포르 달러 대출은 총 2억 싱가포르 달러를 넘을 수 없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ii)비거주 금융기관에게 기관당 5백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으로 싱가포르 달러 신용공여를 하거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달러 표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밖에서 사용될 경우 이를 인출 또는 해외로 송금하기 이전에 외화로 교환되거나 전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p> <p>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투기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거주 금융기관에 대한 싱가포르 달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iii)싱가포르 통화청의 승인을 요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사 설립 가능.</p> <p>4)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역외은행은 2억 싱가포르 달러 대출한도를 우회하기 위하여 관련 종금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신용카드 및 선지불카드 발급 회사를 위하여 타지역에 현금지급기 설치하는 데에는 약속 안 함.</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e) 보증 및 약정	1) 신원보증, 이행보증계약 또는 유사한 보증계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A.b) 활동에 기재된 제한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신원보증, 이행보증계약 또는 유사한 보증계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A.b) 활동에 기재된 제한 그리고 상기 B.b)3)(ii) 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f) 외환,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시장에서 다음의 다음에 대한 자기매매 또는 고객 위탁매매	1) B.(f) 에 열거된 상품의 자기매매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환율 및 금리상품 뿐 아니라, 단기금융상품, 외국환 거래는 금융기관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상품 (수표, 어음, 예금 증서 포함) - 외국환 - 금융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을 포함한 환율 및 금리 상품 	2) 제한 없음 3) 은행 및 종금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선물을 취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금융선물 중개인은 지점 또는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현지 및 외국인소유의 금융기관에 의한 파생상품 제공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2) 제한 없음 3) 상기 B(b) 활동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성유가증권 -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상품이 그 밖의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금융중심지에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동 금융중심지의 감독당국이 자국 시장에서 그러한 상품의 공급을 허용하였을 경우 - 금융기관 본국 감독자 및 본사가 싱가포르 지점/자회사에서 그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 금융기관이 해당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적절한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고 통화청이 인정할 경우 				
	<p>싱가포르 달러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는 Bb)3)(ii)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따른다. 환전업이 은행 및 종금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전업소는 다수 지분을 싱가포르 시민이 소유하도록 요구된다.</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g) 주간사로서의 인수와 배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 자기를 위한 증권 발행에 참여 및 싱가포르 소재의 주식중개사, 은행 또는 종금사를 통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배분을 제외하고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2) 제한 없음</p> <p>3) SGX-ST는 신규 거래 회원을 인정할 것이다. 신규회원은 재류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소 2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로 싱가포르 법인 회사의 싱가포르 달러 표시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p> <p>대표사무소는 영업을 하거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SGX-ST 회원사에 대한 외국의 N 싱가포르에 소재한 유가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에 대한 은행 및 종금사의 회원자격은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국채의 주요 및 등록된 중개인에 대한 약속 안 함.</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2) 제한 없음</p> <p>3) 상기 B(b) 활동에 대하여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h) 통화중개	<p>1) 약속 안 함</p> <p>2) 제한 없음</p> <p>3) 신규 통화중개인에 대한 약속 안 함.</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간접투자관리, 연기금 관리, 보관, 수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자산관리사, 보관금고 및 신탁회사는 지점 또는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단지 Central Depository Pte Ltd만이 증명서 없는 거래 시스템 하에서 증권 보관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투자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 공공퇴직금 또는 법정저축제도의 기금 사용과 관련된 활동은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j)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상품을 포함한 금융자산 결산 및 청산 서비스	1) 해외 거래소에만 등록된 금융자산에 대한 결산 및 청산 서비스 제공 외에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거래소거래증권과 금융선물을 위한 결산 및 청산 서비스는 각각 <i>Central Depository (Pte) Limited</i> 와 <i>Singapore Exchange Derivatives Clearing Ltd</i> 만 제공할 수 있다. 은행법 하에 설립된 오직 1개의 청산결제소만이 싱가포르 달러 표시 수표와 은행간 자금 이전에 대한 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 함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k)신용 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및 자문, 인수, 기업 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적 금융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을 위한 투자와 포트폴리오 조사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된다. 2) 제한 없음 3) 금융 상담회사는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사무소로 설립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을 하거나 대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l)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전송, 그리고 그 밖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의 금융 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로이터, 블룸버그와 같은 업체에 의한 금융정보제공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외국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은 본사 및 자매지점에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통제장치가 있고, 데이터/정보의 무결성 및 비밀이 보전되고, 데이터/정보가 처리되는 현장에서 통화청이 데이터/정보에 대해 현장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2) 로이터, 블룸버그와 같은 업체에 의한 금융정보제공만 허용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로이터, 블룸버그와 같은 업체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3) 로이터, 블룸버그와 같은 업체의 금융정보제공은 허용된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금융데이터 처리서비스의 제공은 은행 및 증권사 고객제공 정보의 기밀성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에 따른다.</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조치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제2절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금융서비스	<p>국경 간 거래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된 수평적 양허는 본 양허표 상의 약속에서 의혹 방지를 위하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 양허표의 모든 조건, 제한, 자격은 싱가포르 투자자 및 그러한 투자자의 대한민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적용된다.</p> <p>다음 조치들은 금융서비스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6조 제1항의 맥락 안에서 건전성 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이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기금요건, 영업인의 자격 및 영업 활동 인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과 같은 관련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 밖의 사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3.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어 결제되는 거래만 취급할 수 있다. 비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는 승인이 요구된다. 비거주자와의 원화표시 대부, 원화 표시 단기증권의 발행, 외환표시 금융신용, 보증 또는 담보제공, 재무상 불건전한 기업의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같은 거래는 승인이 요구된다. 외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지점에 의하여 소유된 자산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 보유되어야 한다. 본점 자본금은 대한민국 지점의 자본금조달 및 대출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요구불예금 금리는 규제된다. 6. 금융기관의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은 제한된다. 7.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8. 파생상품을 포함한 신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대한민국은 1997. 8. 31 일자로 본 양허표에 기재된 금융서비스 중 Mode 1)2)3)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있는 경우에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현행 동결을 약속한다.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A.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p> <p>(i) 직접보험</p> <p>a)상해 및 건강 보험 서비스를 포함한 생명보험서비스</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생명보험업회사에서만 허가된다.</p> <p>대한민국 생명보험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은 제한된다.</p> <p>각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b) 손해보험	<p>1) 해상수출입적하보험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손해보험회사에게만 허가된다.</p> <p>대한민국 손해보험회사와의 합작 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은 제한된다.</p> <p>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업회사에게만 허가된다.</p> <p>관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은 제한된다.</p> <p>대한민국 재보험사 및 재재보험서비스와의 합작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각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iv)보험관련 보조서비스 하위분야 a), b)에 대하여만 적용 a) 손해사정 ¹⁾ b) 보험계리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회사에게만 허가된다.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손해액 및 보험금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활동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p> <p>아래에 열거된 하위 분야에만 적용</p> <p>(i) 예금²⁾</p> <p>(ii) 대출³⁾</p> <p>(iii) 금융 리스</p> <p>(iv) 지급 및 송금</p> <p>(v) 보증 및 약정</p> <p>(vi) 외환서비스⁴⁾</p> <p>(vii) 결제⁵⁾</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상업적 주재는 본국에서 같은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게만 허가된다. (단 금융 리스는 제외) 동일인⁶⁾은 관련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시중 은행 지분의 10퍼센트(비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우 4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다. 동일인은 관련 당국의 별도 승인으로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의 지분을 100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소유한다.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된다.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은 500만달러 또는 자본금의 3퍼센트이다.(둘 중 큰 금액이다.)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증권저축과 신용공여는 최고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른다. 카드론과 같은 수단으로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은 제한된다. 신용카드서비스에 대하여는 수수료, 이자율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최고한도가 적용된다. CD 만기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외환매매는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된다. 선물 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요구된다. 외환대출은 최고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된다. 금융리스, 신용공여,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
- 2)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가능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얻는 행위
 - 3) 은행이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대중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4) 외환을 발행하거나 송금하거나 추심하는 행위
 - 5)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라서 은행이 어음수표를 결제하는 행위
 - 6) “동일인” 및 “비금융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viii)외환,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고객위탁 매매서비스</p> <p>아래에 열거된 상품에만 적용</p> <p>a) 단기 금융 상품 (수표, 어음, CD 포함)</p> <p>b) 외환</p> <p>c) 금융 파생상품 (선물옵션 포함)</p> <p>d) 외환·금리 상품 (swap, forward rate agreements 포함)</p> <p>e) 양도성 증권</p> <p>f) 그 밖의 양도 가능 증서 및 금융자산 (금괴 포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상업적 주재는 본국에서도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 금융기업에만 허가된다.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다. 각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underwriting) c) 증권배분 (placement) d) 증권에 관련된 그 밖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상업적 주재는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을 취급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게만 허가된다.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다.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x) 자산 관리</p> <p>아래에 열거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p> <p>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p> <p>b) 모든 형태의 간접투자관리</p> <p>c) 보관</p> <p>d) 신탁⁷⁾(투자일임 서비스 포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자산관리회사에게만 허가된다.</p> <p>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다.</p> <p>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본업인 은행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인가(2종류)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p> <p>부동산신탁업은 약속하지 아니한다.</p> <p>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7) 수탁자가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행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xi) 신용정보서비스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기존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퍼센트 미만의 지분 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약속 안 함 2) 약속 안 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p>(xii)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p> <p>아래에 열거된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p> <p>a) 투자자문업</p> <p>b) 신용평가 및 분석</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상업적 주재는 외국의 투자자문회사에게만 허가된다.</p> <p>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다.</p> <p>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한다.</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무보증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를 하고자 하는 신용평가회사는 관련 당국이 지정하여야 한다.</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p>1) 약속 안 함</p> <p>2) 약속 안 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p>	